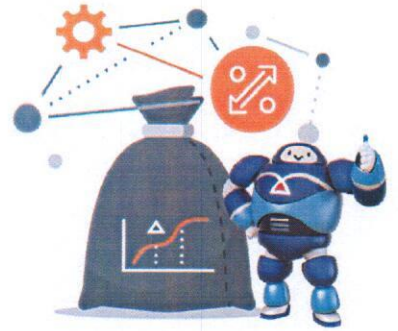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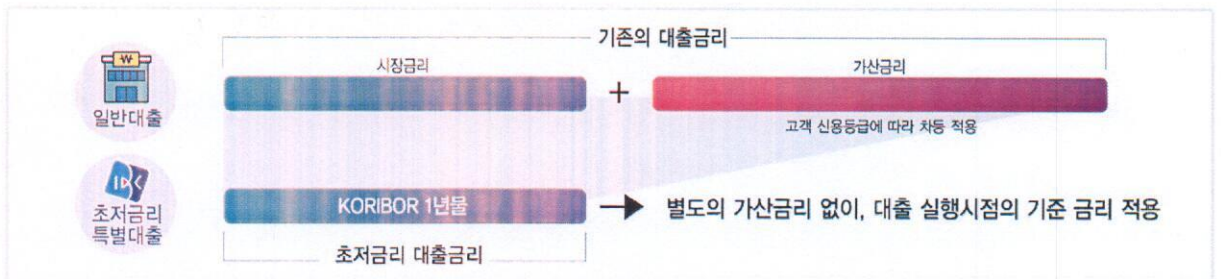


# 소상공인·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

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



- **지원규모** : 1.8조원
- **판매기간** : 한도 소진 시까지
- **대출금리** :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출 실행시점 기준금리 적용 ('19.1.21 기준 KORIBOR 1년물 1.93%)  
우대금리는 최대 3년간 적용되며,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상금리로 환원



## · 상품 주요내용

· **대출대상** : 신용등급 B이상이고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서 발급기업

구분	신용보증기금	기술보증기금	신용보증재단
기관별 지원대상	· 소상공인 중 성장유망기업 · 유망창업기업	· 혁신형 소상공인 · 기술력 보유 기업	· 소상공인 등 단, 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제외

주) 상세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및 보증기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- **자금용도** : 운전자금
- **상환구조** : 만기일시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
- **대출한도**

구분	신용보증기금	기술보증기금	신용보증재단
대출한도	동일인당 2억원 이내		동일인당 1억원 이내

주) 대출한도는 고객별 신용등급, 업종, 연간매출액 등 은행의 내부심사기준 및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금액에 따라 책정

## · 중도상환해약금 : 면제

\* 중도상환 해약금 :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

## · 수수료 및 부대비용 : 인지세 등

\* 인지세 :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총 인지세의 1/2은 고객이 부담 (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청한 창업기업은 면제)

## · 대출 및 제출서류 문의 : 상기내용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IBK기업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준법감사인 심의필 제 2019-0384호 (2019.01.23) 게시기한 : 2019.12.31 출급번호 : LW281

· 상기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 가능하며, 당행 여신규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연체자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대출원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 됩니다. ·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BK고객센터(☎ 1566-2566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·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(금융감독원 : 국민안심 ☎ 332, IBK기업은행 : 080-800-0199, IBK기업은행은 상품, 향상을 받지 않습니다. 권리경쟁 위반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☎02-729-7930, e-mail:ibknetics@ibk.co.kr)



IBK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지점 ☎ 02)3400-6100 담당자 : 차장 추동현(내선 515)